

수 사

해설 : 이정철 교수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
-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해설: ②

㉠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 ③ 현행 수사체계는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지휘로 인하여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라는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저해시킨다.
- ④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 해설: ④

의 견		주요논지
찬성론	인권보호 및 국민 편의적 측면	• 인권법 제정, 시민단체 등 인권침해 감시기능 강화 • <u>국민의 편익저해(증복조사)</u>
	경찰 조직적 측면	• 경찰의 이중지배구조로 인한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인사 관리적 측면	• 사법경찰의 자질향상 • 사법경찰의 사기저하
	수사 업무적 측면	• 수사업무의 비능률성 • 검사의 광범위한 경찰업무 간섭 • <u>검사지휘의 업무과중</u>
반대론	법리적 측면	•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 • 적법절차보장 및 국민의 인권보호, 법률지식미흡
	현실적 측면	• 경찰권의 비대화 • 정치적 중립보장 미흡
공통적측면		검찰로의 권력의 집중과 경찰로의 권력 집중 방지는 찬성론과 반대론에서 서로 주장하는 공통된 입장

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 해설: ④

완전수집의 원칙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를 수사관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감식·검토의 원칙	• 수집된 자료는 그것을 면밀히 감식·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순히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만 그치지 말고 감식 기타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을 유용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	수사자료의 수집과 검토 후에는 그것을 기초로 사건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적절히 해보아야 한다.
④검증적(협증적) 수사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 수사사항 -> 수사방법 -> 수사실행
사실판단증명의 원칙	수사관의 판단(주장)을 객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객관적 증명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4.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 ㉡ 수사본부장 및 부분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 ㉢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 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 ㉤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해설: ②

㉡ 수사본부장의 지명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고 부분부장은 본부장이 정해짐으로 인하여 지명된다.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9조(수사본부장) ①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업무 담당 부장, 기타 지방경찰청의 차장
- 2.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 3. 사건관할지 경찰서장
- 4. 합동수사본부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기관별 대표자

② 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10조(수사부분부장) ① 부분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지방경찰청 주무과장
나. 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지 경찰서장
- 2.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경찰청 주무제장
나. 관할지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 ② 부분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경찰청·경찰서간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

㉔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된다.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5.「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 ②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 ④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해설: ①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 ②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 규칙 §9① 본문)
- ③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동규칙 §9① 단서)
-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동규칙 §7⑤)

6.「고소·고발사건이송및수사촉탁에관한규칙」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한 후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에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 ② 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 ③ 참고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설: ③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구고소·고발사건이송및수사촉탁에관한규칙폐지)- 이문제는 법률명 변경을 모르고 구법에 의해 출제된것으로목에티

사건의 이송	• 사건에 대해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다만 사건 접수 시 관할권이 있었으나 이후 관할권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 •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 기타 사건을 이송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7.「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 ②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 ③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④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해설: ②

생략사유	해제사유
① 사건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사건내용이 일체불상이거나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③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8.「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 ①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 ②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 ③ 이용자의 가입·해지일자
-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 해설: ③

구 분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근 거	통신비밀보호법		
개 념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 →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나 통신자료에 해당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사용도수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 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통신자료라 하는데 특정시간, 특정유동IP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요구하는 가입자의 정보(인적사항, 성명, 가입 및 해지일자 등) 통신자료는 관서장의 협조공문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9.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 기타 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 해설: ③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폐지되었으므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문제로 나와야 하는데 옥의티

㉠ 의견서와 기타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동준칙 §82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동준칙§82④)

㉢ 의견서가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동준칙§82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동준칙§82③)

10.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특별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② 중요장물수배서 - 흑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이외의 중요사건

- ③ 보통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 ④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 해설: ④

특별중요장물수배서	①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이다. ② <u>홍색용지</u> 를 사용한다.
중요장물수배서	① <u>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u> 에 관하여 발부하는 장물수배서이다. ② <u>청색용지</u> 를 사용한다. ③ 다음은 중요장물수배서의 피해품에 해당한다. • 중요문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품 • 외교사절 등에 관련된 사건의 피해품 기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피해품 • 살인, 강도 등의 중요사건에 관한 피해품 • 다액절도 또는 특이한 수법이나 상습범이라고 인정되는 침입절도사건의 피해품 • 기타 중요 또는 특이사건의 피해품
보통장물수배서	① 기타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이다. ② <u>백색용지</u> 를 사용한다. ③ 보통장물수배서 중 시계, 보석류, 사진기류, 의류, 사무기류(타이프라이터, 계산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간이한 그림 또는 문자만으로 특징을 표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한 종합 장물수배서를 발부한다.

11.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 즉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고 한다.
- ㉡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
- ㉢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고 한다.
- ㉣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 해설: ④

정상지문	- 먼지, <u>혈액</u> 등의 유색의 물질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융선에 묻어 있던 유색의 물질이 물체로 옮겨지면서 만들어지는 바, <u>착색된 부분이 융선이 것이 보통이며</u>, 이러한 지문을 정상지문이라 한다. - 손끝에 묻은 혈액·잉크·먼지 등에 의하여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같은 것이다.
역지문	- 다량의 유동성 물질이 묻은 손가락이 강한 압력으로 물체에 밀착되거나 진흙 등에 나타난 지문은 융선 사이의 고랑 부분이 착색되고 융선 부분은 착색되지 않은 지문이 생성되는 바, 이러한 지문을 역지문이라 한다. -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 등에 강한 압력으로 인상된 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우 지문의 융선이 반대로 나타나므로 이렇게 부른다.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찰총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

여야 한다.

㉔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디엔에이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㉕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해설: ③

① 경찰청장(구속피의자, 범죄현장대상)과 검찰총장(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대상자-수형인)은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 서로연계(동법률§4)

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동법률§12①)

㉕ 동법률§8③

㉖ 동법률§13② 2호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찔과 하였을 경우
- ②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집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 ③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 ④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 해설: ②

관통총창	총알입구, 사창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② 맹관총창	총알입구와 사창관이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
③ 회선총창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구멍을 뚫음) 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근육, 인대등) 사이를 우회하였을 경우
① 찔과총창	탄두가 체피(몸의표면)만 찔과하였을 경우
반도총창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집이나 피부밑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14.「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
- ③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 ④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 해설: ④(동규칙§46 4호)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동규칙§7①)

-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50②)
- ③ 신체검사(동규칙§8④)

종류	대상자	방법
외표검사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② 간이검사	일반적으로 유치인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검사원자	신체, 의복, 소지품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5.「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 ②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 ③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 ④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 해설: ②

첩보수집대상자	•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증범죄실사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살인, 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하였거나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 강도, 절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자료보관대상자	• 첩보수집 대상자중 기간만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첩보수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살인, 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로 범행동기, 범죄사실 등 심사결과 자료보관만으로 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강도, 절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중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